

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8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54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10. 6.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54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접수 제11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이 대표로 있었던 유한회사 E에게 229,020,193원의 외상매출채권 및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D에게 퇴직연금 20,855,064원이 있었으므로, D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피고가 D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들 중 유한회사 E의 외상매출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아닌 위 회사의 재산이므로 이를 D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더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G이고, D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21. 3. 16. 기준으로 퇴직연금 20,855,064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퇴직연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앞서 본 D의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판사 오창민